

제 240회 정례회
2005. 7. 20(수)

심 사 보 고 서

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

산업경제위원회

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7월 4 일

- 회부일자 : 2005년 7월 4 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40회 정례회

-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(2005. 7. 13) 상정, 질의답변,
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정 정 순)

가. 제안 이유

-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와 동북아·미주 위주의 국제교류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고, 세계경제의 중요축으로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출확대와 통상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 필요성 증대로 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-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(교류협력의 범위)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

나. 추진경위

- 200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 충청북도 방문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
- 2004년 10월 30일 충청북도 실무대표단 중부 자바주 사전방문
- 2004년 11월 28일 충청북도 대표단 중부 자바주 방문 우호교류협정서 체결

다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체결
 - 체결예정 : 2005년 9월 29일
 - 체결장소 : 충청북도
 - 체결방법 :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(주지사외)초청 협정서 서명·교환
-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
 -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분야
 -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교류
 - 대학간의 협력,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
 -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·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이상 업)

-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양 지역간 경제사절단 파견 및 농업분야 상호협력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,

- 1차 산업 위주 산업형태와 1인당 GDP 1,181불의 자바주와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.
- 세계화 시대에 흐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자매결연 체결을 현재의 동북아 및 미주에서 벗어나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간 자매결연협정서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간

자 매 결 연 협 정 서

충청북도지사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부자바주지사가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(이하 “양 도 · 주” 라 한다)는

- 2003년 10월 8일 충청북도에서 서명한 우호교류의향서와
- 2004년 11월 28일 중부자바주에서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,
-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,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.

제 1 조

양 도 · 주는 국제교류사업이 양측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, 동 사업이 양 지역 발전에 있어, 효과적이고,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.

제 2 조

1. 양 도 · 주는 다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 분야
- 나.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 교류
- 다. 대학간의 협력,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
- 라.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 · 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
- 마. 기타 양 도 · 주지사가 합의하는 분야

2. 양 도 · 주는 자국내 법규를 준수하며,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

1. 충청북도 및 중부자바주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 분야를 실현 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.
2.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.
3.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.

제 4 조

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실천과 관련하여,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.

제 5 조

본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.

제 6 조

본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7 조

본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. 다만,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8 조

본 협정서는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, 이를 양측이 보관한다.

2005. 9. 29.

이 원 증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

마 르 디 안 또
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지사

관련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의4 (교류협력의 범위)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“교류협력”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을 말한다.

□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

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